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7. 1.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6월 12일 이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6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96.6.22), 제2차(96.6.24) 내무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가. 제안이유

o 가스안전관리, 재난관리 및 종합운동장설치준비단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o 본청 ---- 8명증원 (6급:3명, 7급:3명, 8급 :2명)(안 제2조)
.에너지관리기구의 기 설치로 가스안전관리정원은 교충처리계로 대체활용(기획감사담당관실 교충처리계) - 6급:1명, 7급:1명
.재난관리 정원(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) - 6급:1명, 7급:1명, 8급:1명
.종합운동장설치준비단 정원(시민과 종합운동장설치준비단) - 6급:1명, 7급:1명, 8급:1명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안봉환)

o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,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 기능강화와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 강화 및 신규확충할 공공시설(종합운동장)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의거 정원이 내무자치12200-321(96.4.29)호, 내무자치12200-323(96.4.30)호와 경기도자치 12200-1688호 1689호 및 경기도자치 12200-1854호로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의 정원을 325명에서 333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